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48

발의연월일: 2021. 1. 26.

발 의 자: 강선우·홍성국·남인순

양향자 • 맹성규 • 최종윤

이규민・허종식・정춘숙

전혜숙 · 고영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를 위하여 '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'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므로, 사업을 안 정적,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 려는 것임(안 제18조의3 및 제24조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79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3(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 지원 및 부인 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 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 - 3.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제24조 중 "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
- 2.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7790호 장애인 건강권 법률 제1779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<신 설> 제18조의3(장애친화 산부인과 운 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) ① 보 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・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 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・인력・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

제24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 또 제24조(청문) ------는 시 · 도지사는 제21조에 따 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을 하여야 한다.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

-----<u>다음</u> 각 호의 하려는-----

- 1.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
 - 의 지정 취소
- 2.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 료센터의 지정 취소